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지반침하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70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1970호)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3 |
| 가. ‘지하안전관리’ 정의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 업무 총괄 ·<br>조정 명시, 지반침하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br>(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 | 3 |

## I.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1970호)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5.

다. 회 부 일 : 2025. 8. 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공사현장 또는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령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정의규정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의2, 제3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 3. 검토의견

가. ‘지하안전관리’ 정의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명시, 지반침하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 4. (현행과 같음)<br><u>4의2. “지하안전관리”란 지반침하 사고 및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u>                                                                        |
| 5. ~ 13. (생략)<br><u>&lt;신설&gt;</u>                                     | 5. ~ 13. (현행과 같음)<br><u>제3조의2(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u>                                                                                                            |
| <u>&lt;신설&gt;</u>                                                      | <u>제46조의2(보험 가입)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br><u>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                                                                                                                          | 개정안                                                                                                                             |
|-----------------------------------------------------------------------------------------------------------------------------|---------------------------------------------------------------------------------------------------------------------------------|
| 제56조(과태료) ① · ② (생략)<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 17. (생략)<br><u>&lt;신설&gt;</u><br><br>④ (생략) | 제5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1. ~ 17. (현행과 같음)<br>18.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br>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①‘지하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함을 명시하며(안 제3조의2 신설), ③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안 제46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안 제56조제3항제18호 신설) 하려는 것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867건이고, 2020년 284건에서 2024년 10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연간 약 100건 이상(연 평균 173.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연 평균  |
|-------|-------|-------|-------|-------|-----|-------|
| 284   | 142   | 177   | 162   | 102   | 867 | 173.4 |

※자료: 국토교통부

\*주- 지반침하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394건), 다짐(되메우기) 불량(156건), 굴착공사 부실(85건) 등이 있음.

2025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14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지하안전 정보시스템<sup>1)</sup>에 신고되어 있으며,<sup>2)</sup>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 <https://www.jis.go.kr>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2025.9.9. ‘지하안전정보시스템-지반침하사고-지반침하사고 목록’ 검색  
(검색조건: 사고일자 2025.1.1.~2025.8.31.)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반침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사회재난<sup>3)</sup>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지반침하에 대하여 「재난안전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sup>4)5)</sup>이 발의되기도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sup>6)</sup>이 되는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831호, 2025.4.15.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발췌)

-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80호, 2025.7.31.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발췌)

-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sup>7)</sup>을 개정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법」과 개정안의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난안전법」은 ①제3조제4항<sup>8)</sup>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
| 다.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전도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u><br>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br>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두고 있고, ②제6조<sup>9)</sup>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제76조의5제2항 및 제82조제2항제1호<sup>10)</sup>에서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도 「재난안전법」의 규정들과 유사하게 ①‘지하안전관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함을 명시하며, ③지반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2017. 1. 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재난안전법」 및 개정안의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비교 】

| 구분                           | 「재난안전법」                                                                                                             | 개 정 안                                                                                                                                           |
|------------------------------|---------------------------------------------------------------------------------------------------------------------|-------------------------------------------------------------------------------------------------------------------------------------------------|
| ① ‘안전관리’의 정의 규정              | ○안전관리<br>-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u>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u> 하기 위하여 하는 <u>모든 활동</u>                                   | ○지하안전관리<br>-지반침하 사고 및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u>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u> 하기 위하여 행하는 <u>모든 활동</u>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총괄·조정 명시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br>-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u>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함</u> .                                    | ○지하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br>-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u>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함</u> .                                                                  |
| ③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br>-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u>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u> . |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br>-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관리 중에 발생한 지반침하로 <u>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u> 그 손해에 대한 <u>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u> . |

| 구분 | 「재난안전법」                                          | 개 정 안                                      |
|----|--------------------------------------------------|--------------------------------------------|
|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br>-300만원 이하 <u>과태료</u>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br>-500만원 이하 <u>과태료</u> 부과 |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제6조, 제76조의5제2항, 제82조제2항제1호, 개정안 제2조제4호의12, 제3조의2, 제46조의2, 제56조제3항제18호 요약

이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반침하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 동향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sup>11)</sup>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법」의 주요 사항들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sup>12)</sup>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재난안전법」 외에 아래 표와 같은 유사 입법례(예시)가 있음.

| <‘안전관리’의 정의 규정 입법례>                                                                                                                                               |  |
|-------------------------------------------------------------------------------------------------------------------------------------------------------------------|--|
| 「전기안전관리법」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u>전기안전관리</u> ”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7. “ <u>안전관리</u> ”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총괄·조정 명시 입법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입법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궤도운송법」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 지반침하 사고 외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사고를 포함하는 경우 각 지하시설물을 소관하는 타 부처와의 업무 혼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손해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